

학생 준칙

- 제정 : 1978. 3. 21. 개정 : 2015. 5. 13.
- 개정 : 1979. 3. 1. 개정 : 2015. 7. 29.
- 개정 : 1986. 1. 20. 개정 : 2016. 3. 9.
- 개정 : 1990. 3. 1. 개정 : 2017. 3. 1.
- 개정 : 2011. 6. 30. 개정 : 2017. 8. 31.
- 개정 : 2018. 3. 1.

제 1 장 학생증

- 제1조(학생증)** ① 입학절차를 마친 학생은 학생증을 신청하여 교부 받아야 한다.
- ② 학생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항상 학생증을 휴대하여 본교 교직원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 ③ 학생증은 타인에게 대여 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변조할 수 없다.
- ④ 학생증을 분실하였을 때는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학생증은 학적이 변동(휴학, 졸업, 자퇴, 퇴학, 제적)되었을 때는 즉시 학생복지과에 반납하여야 한다.
- ⑥ 학생증 발급은 본교 제휴은행을 통해 신청하며, 신청 후 발급된 학생증은 학생복지과에서 수령하며, 수령 전 학적이 변동(휴학, 졸업, 자퇴, 제적)된 경우 수령이 불가능하다.
- ⑦ 발급 후 수령하지 않은 학생증과 학적변동 등으로 반납된 학생증의 보존기간은 사유발생일로부터 절대기일로 산정하여 1년 후 폐기한다.

제 2 장 행사 게시 인쇄물 배포

제2조(행사) 교내외를 막론하고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사전 5일 전 학생복지과에 신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강의시간에 행사(집회)는 불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금지사항)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는 사전 승인 없이 불가능하며, 판매활동을 위한 일체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제4조(게시) ① 교내에서 각종 광고 인쇄물 등을 게시(배부)하고자 할 때에는 학생복지과에 신고하여 허가(등록날인)된 사항에 한하여 지정된 게시판에 부착 또는 배부하여야 한다.

② 교내환경 미화상 게시용 규격은 4절지 (신문 1면 크기)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내 각종 시설물에는 오염행위 및 안전사고 등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일체를 금지 한다.

제5조(단체활동 제한) 각종 단체의 활동은 매 시험 개시 1주일 전부터 종료시까지 금지한다.

제6조(동아리활동 승인) ① 동아리등록과 운영에 관한 내규에 의한 동아리활동 승인 기간은 당해년도 2학기부터 익년 1학기까지로(1년)하며, 계속활동 및 신규활동 승인을 희망하는 동아리는 매년 2학기 개강 후 20일 이내 신청서를 학생복지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신규활동 동아리는 한 학기 동안 가 승인으로 활동사항을 확인 후 최종 승인을 허락한다. 단, 동아리 활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계속) 신청서를 반려하며, 계속 활동 대상 동아리는 폐쇄조치를 한다.

② 신청서 제출이 없는 동아리는 해산한 것으로 보며 임의 폐쇄조치를 한다.

제7조(집체 및 단체 범위) 본교에서의 집회 및 단체 범위는 총학생회 조직에 속해 있는 것에 한하며, 그 구성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휴학생 제외)으로 만 한다.

제 3 장 학생 회비

제8조(학생회비) 총학생회비는 매학기 총학생회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9조(학생회비 집행 및 이월) 학생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출은 대학 회계 집행 규정을 준용하여 총학생회장 명의로 학생복지과에 품의서를 제출하고 학생복지과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대상(구매업체 등) 계좌로 지급(단, 현금구입 등이 필요한 지출경비는 총학생회장 명의 계좌로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총학생회장은 경비지출 후 정산관련 증빙서류(감사결과, 영수증 등)를 학생복지과에 제출하여야하며, 임기 내 지출잔액은 다음 총학생회에 이월한다.

제 4 장 졸업비

제10조(졸업비) 졸업비는 매학기 총학생회(졸업준비위원회)에서 정해진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11조(졸업비 집행) 졸업비 경비지출은 학생복지과에서 품의서 및 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 학생지원처장의 승인을 받아 지출대상(구매업체 등) 계좌로 지급 한다.

제 5 장 일반 준수사항

제12조(신상변동) 교내 포털시스템(학생 종합정보)에 기 등록되어 있는 학생 개인 기본정보 사항이 신규, 변경 또는 잘못입력(영문성명, 전화번호, 주소, 장학금 지급용 학생증 이면계좌 등)되었을 경우 즉시 교내 포털시스템에 로그인하여 변경된 항목을 수정·입력 하여야 하며, 수정·입력이 안되는(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항목은 학적과 또는 학생복지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

제13조(교내활동) 교내활동 중 도서관(개방시간 내)외 야간수업 종료 후 일체의 교내출입 및 야간활동을 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서식에 의하여 5일전에 학생복지과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본교 재학생과 타교 학생이 함께 진행하는 활동의 경우 행사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해당 학교장 또는 관련 부서장 명의 협조요청 공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14조(교외활동) 교내 수업시간과 중첩되거나, 본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교외활동(유흥관련 부직) 등은 할 수 없으며, 각종 행사(집회, M.T, O.T 등)를 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사전 5일 전 학생복지과에 신고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본교 재학생과 타교 학생이 함께 진행하는 활동의 경우 행사관련 내용이 포함된 내용으로 해당 학교장 또는 관련 부서장 명의 협조요청 공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15조(안전사고 예방) 교내에서는 안전사고를 유발(음주, 취사, 금연구역 흡연 등)시킬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할 수 없다.(단,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도감독을 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일부 허락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대책 마련) 각종 교외 행사(M.T, O.T 등) 진행 전 해당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부서장) 지도·관리(감독)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시 지도·관리자(교직원)가 동행하여야 한다.

1. 계획수립 : 기간, 장소, 연락처, 위치, 인솔 교직원, 대행 여행사, 보험가입, 세부일정(사전공지)
2. 준수사항 : 행사일정 사전 공지를 통한 참석대상자 확인, 숙박시설(장소), 교통수단, 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행사 전 답사, 참가학생에 대한 사전교육(음주, 흡연,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선후배간 열차려, 고압적 행위, 숙소내 소방시설 및 대피로,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처 등), 필요시 교직원 동행, 예산 집행 내역 공개, 사안 발생 시 대처 등 교육부의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 및 대학 내 건전한 집단 활동 운영 대책을 참고하여 진행한다.

제17조(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교 입학생은 학사행정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이

6-1-8 학생 준칙

용·제공 동의서 필수 항목을 교내 포털시스템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78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79년 3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86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재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